

서울특별시 마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1. 9. 9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1. 8. 27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: 2021. 8. 31.

다. 상정일자

- 제250회 임시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(2021. 9. 9.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감사담당관 김광현】

가. 제안이유

공직자 부조리 신고대상의 공직자 범위와 부조리 행위 신고기한을 확대하여 신고포상금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 표준안에 따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부조리 신고대상에 자치단체 소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포함(안 제2조)
- 부조리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 징계시효 기준으로 확대(안 제4조)
-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문장 정비
(안 제1조~제3조, 제5조~제12조)

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유준상)

○ 본 일부개정안은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, 공직자 부조리 신고대상의 공직자 범위와 부조리 행위 신고기한을 확대하여 신고포상금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 표준안에 따라 일부 개정 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주요내용으로는

(안 제2조)에는 부조리 신고대상에 자치단체 소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포함.

○ (안 제4조)에는 부조리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 징계시효 기준으로 확대함.

○ (안 제7조)에는 정액 및 차액 지급규정의 신설함.

○ (안 제1조~제3조, 제5조~제12조)에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문장 정비함.

○ 검토의견으로는

본 조례안은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7조(제도개선의 권고) 제①항¹⁴⁾에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고 명시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14) 제27조(제도개선의 권고)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, 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·점검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, 이 경우 위원회는 이를 재심의 하여야 한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5. 토론요지: 없음
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8. 기타: 없음

 처음으로